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55호 2012. 12. 31 (월요일)

조 례

- | | | |
|-----------------|---------------------------------------|----|
| ○ 하동군 조례 제1991호 | 하동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 | 2 |
| ○ 하동군 조례 제1992호 |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 5 |
| ○ 하동군 조례 제1993호 |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 7 |
| ○ 하동군 조례 제1994호 |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 | 14 |
| ○ 하동군 조례 제1995호 |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 . . | 19 |

규 칙

- | | | |
|-----------------|--|----|
| ○ 하동군 규칙 제1081호 |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21 |
| ○ 하동군 규칙 제1082호 |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 | 23 |

고 시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2-66호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고시 | 27 |
|--------------------|--------------------------------------|----|

공 고

- | | | |
|-----------------------|---------------------------------|----|
| ○ 하동군 공고 제2012- 1113호 |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공고 | 31 |
|-----------------------|---------------------------------|----|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355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1호

하동군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포상조례를 하동군 포상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355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포상절차) ① _____ <u>실과장</u> _____</p> <p>② _____ <u>인사위원회</u> _____</p>	<p>제9조(포상절차) ① _____ <u>실과소장</u> _____</p> <p>② _____ <u>공적심사위원회</u>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2호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③ 법 제24조제2항과 영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 - - -</p> <p>-----</p> <p>.</p> <p>② - - - -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 - - -</p> <p>-----</p> <p>.</p> <p>② - - - - -</p> <p>.</p> <p>③ 법 제24조제2항과 영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3호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어업인의 자립경영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어업시설 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중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하 동 군 공 보

(8) 제 355 호

3.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용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하동군과 농어업인 용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하동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1. 농수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수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어업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사업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용자 한도액 및 대출기간) 용자 한도액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에 의거 500만원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기간) 보조금 보조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용자취급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상·하반기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이자 부담비율 결정)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군과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단 부담비율은 군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지)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355 호

[별지 1]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집) 번호	(휴대폰)
	주 소					
사 업 분 야	영 농 경 력		영농교육 이수실적	·과정명 : / 시간 ·과정명 : / 시간		
	사 업 대 상 지	사 업 내 용		사 업 규 모		
신 청 내 용	사 업 대 상 지	군 읍·면 번 지	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원)	계	용 자		자부담		

하동군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 1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발행)

사 업 계 획 서

1. 신청내역

신청 분야		작목 명		재배(사육) 면적		용자 시기	
-------	--	------	--	-----------	--	-------	--

2.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 내역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용자	자부담	

※ 별첨 : 사업비 세부내역서(공신력 있는 업체발행)

3. 향후 영농(어)계획

(단위 : 평, 마리, 천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 면적	사육 두수	연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 면적	사육 두수	연간 판매수입	경영비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하 동 군 공 보

(12) 제 355 호

[별지 2]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청구서

년도 농어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에 융자된 대출금 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보조금청구내역

(단위: 원)

농협별	연도별	총 원금	이자총액	농협부담액	보조청구액	비고
계						

붙 임: 농어가별 융자금 이자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융자취급 금융기관장(직인)

하동군수 귀하

하 동 군 공 보

(13) 제 355 호

농어가별 융자금 이자보조금 청구내역

(단위:원)

채 무 자		당초융자		이자계산근거		이자부담내역			
주 소	성명	대출일	금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이자 총액	융자기관 부담액	보조신청	
								이율 (%)	금액
계									

하 동 군 공 보

(14) 제 355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4호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등) 운영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하 동 군 공 보

(16) 제 355 호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적립금과 진료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관) 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p>	<p>제3조(정관)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p>
<p>제4조(기능)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한다.</p>	<p>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p>
<p>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p>	<p>제5조(기구) ① ----- 15명 이내----- -----</p>
<p>제6조(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20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p>	<p>제6조(임원) 1. --- 명 2. --- 명 3. --- 15명 이내 4. ---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하 동 군 공 보

(18) 제 355 호

<p>⑤ (신 설)</p> <p>제7조(사무장)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8조(재정) ①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까지 협의회 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의 감사는 세입, 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⑤ 감사는 협의회 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p> <p>제7조(수당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의 활동과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제8조(재정) ① 협의회 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1995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355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 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 건강증진법」 제 34조 제3항에 따라 <u>5만원</u>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제13조(과태료)① ----- ----- ----- <u>3만원</u>의 -----</p>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81호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포상조례시행규칙을 하동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제14조”를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355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_____ _____ 제14조에 _____ _____	제1조(목적) _____ _____ 시행에 _____ _____
제2조(사무주관) ① _____ 자치행정과_____.. _____ _____ 행정지원과_____	제2조(사무주관) ① _____ 행정과_____.. _____ _____ 행정과_____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 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 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 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82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355 호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90cm×6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한양태백 볼트체)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공원색 DIC 644),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DIC 198)
공원도면(연두 DIC 61)
흡연구획(노랑 Y 100)
- ㄹ. 재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브레스팅공법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60cm×4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35cm×9.5cm
- ㄴ.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회색 K85, 적색(DIC2483)]
테두리(연두C40Y100), 픽토그램(초록 C40Y100), 금연구역(Y50)
- ㄹ. 재질 : PVC재질,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라.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30cm×2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7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마. 아파트 표지판(예시)



- ㄱ. 규 격 : 60cm×40cm
-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하 동 군 공 보

(26) 제 355 호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2 - 66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 입 · 세 출 예 산 고 시

제2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확정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하 동 군 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현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64,008,584	100.00%	350,939,061	100.00%	13,069,523	3.72%
일반회계	338,958,295	93.12%	326,767,011	93.11%	12,191,284	3.73%
특별회계	25,050,289	6.88%	24,172,050	6.89%	878,239	3.6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89,860	1.48%	5,379,860	1.53%	10,000	0.19%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756,850	0.21%	794,380	0.23%	△37,530	△4.72%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335,361	0.09%	381,709	0.11%	△46,348	△12.14%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590,000	0.16%	590,000	0.17%	0	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83,097	0.54%	1,948,258	0.56%	34,839	1.79%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765,934	1.58%	4,828,398	1.38%	937,536	19.4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2,973,172	0.82%	2,904,230	0.83%	68,942	2.37%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160,384	0.32%	1,160,384	0.33%	0	0.0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6,095,631	1.67%	6,184,831	1.76%	△89,200	△1.44%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64,008,584	100.00 %	350,939,061	100.00 %	13,069,523	3.72%
지방세	14,877,000	4.09 %	14,800,000	4.22 %	77,000	0.52%
세외수입	50,110,106	13.77 %	46,467,023	13.24 %	3,643,083	7.84%
경상적 세외수입	7,407,562	2.03 %	8,121,923	2.31 %	△714,361	△8.80%
임시적 세외수입	42,702,544	11.73 %	38,345,100	10.93 %	4,357,444	11.36%
지방교부세	154,038,705	42.32 %	153,185,674	43.65 %	853,031	0.56%
재정보전금	10,000,000	2.75 %	10,000,000	2.85 %	0	0.00%
보조금	134,982,773	37.08 %	126,486,364	36.04 %	8,496,409	6.72%
국고보조금등	106,262,819	29.19 %	100,293,026	28.58 %	5,969,793	5.95%
도비보조금등	28,719,954	7.89 %	26,193,338	7.46 %	2,526,616	9.65%

하 동 군 공 보

(30) 제 355 호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64,008,584	100.00 %	350,939,061	100.00 %	13,069,523	3.72 %
일반공공행정	30,113,632	8.27 %	26,781,074	7.63 %	3,332,558	12.44 %
공공질서및안전	8,442,196	2.32 %	6,885,600	1.96 %	1,556,596	22.61 %
교육	3,303,592	0.91 %	3,345,732	0.95 %	△42,140	△1.26 %
문화및관광	28,559,292	7.85 %	26,299,657	7.49 %	2,259,635	8.59 %
환경보호	24,625,028	6.76 %	24,908,964	7.10 %	△283,936	△1.14 %
사회복지	51,947,704	14.27 %	55,183,407	15.72 %	△3,235,703	△5.86 %
보건	7,223,725	1.98 %	7,423,456	2.12 %	△199,731	△2.69 %
농림해양수산	79,790,641	21.92 %	78,981,743	22.51 %	808,898	1.02 %
산업·중소기업	34,500,447	9.48 %	24,754,907	7.05 %	9,745,540	39.37 %
수송및교통	24,020,960	6.60 %	23,308,378	6.64 %	712,582	3.06 %
국토및지역개발	26,853,793	7.38 %	26,539,699	7.56 %	314,094	1.18 %
예비비	1,787,542	0.49 %	3,387,658	0.97 %	△1,600,116	△47.23 %
기타	42,840,032	11.77 %	43,138,786	12.29 %	△298,754	△0.69 %

하동군공고 제2012-1113호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안내 공고

2012년 12월 31일

하 동 군 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대상 토지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기로 한 토지
- ※ 단, 2013. 1. 1. ~ 6. 30.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함

2.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

① 토지특성조사	2013. 1. 2 ~ 2. 22
② 지가산정	2013. 2. 18 ~ 3. 15
③ 산정지가검증	2013. 3. 18 ~ 4. 4
④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13. 4. 5 ~ 4. 23
⑤ 의견제출지가 검증	2013. 4. 24 ~ 5. 3
⑥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2013. 5. 6 ~ 5. 10
⑦ 지가결정·공시	2013. 5. 31
⑧ 이의신청	2013. 5. 31 ~ 7. 1
⑨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2013. 7. 2 ~ 7. 30

3.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 증여,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
- ㉡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

4. 문의하실 곳 :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055-880-2122~7)

※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창구 운영